

www.hrdkorea.or.kr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지급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귀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4.7.29부터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 국내에서 보험금을 신청하고, 보험금 신청 시
① 해외계좌 입금 등을 통한 해외수령방식과 ② 출국당일 공항수령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귀국비용보험금은 종전과 같이 출국 전에 지급

● 출국만기보험이란?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1년 이상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 적용제외 :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적용 건설업
- ※ 가입 시기 및 별칙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납입보험료 : 외국인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사업자에게 납부
- ※ 유의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출국만기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 지급 예상액이 통보되면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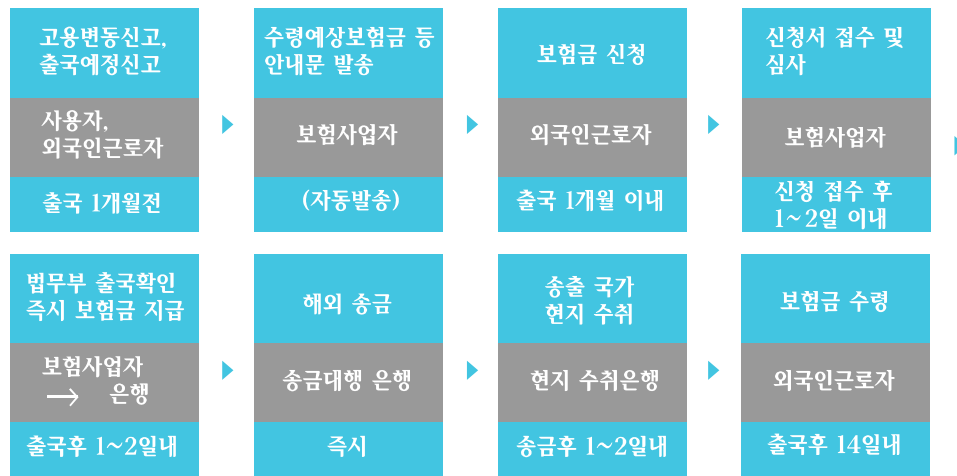
●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시 약 1개월 전(출국예정신고 후) 보험사업자(삼정화재)에게 보험금을 신청하고,
 - ① 해외계좌 입금 등 해외에서 수령하는 방법과 ②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 중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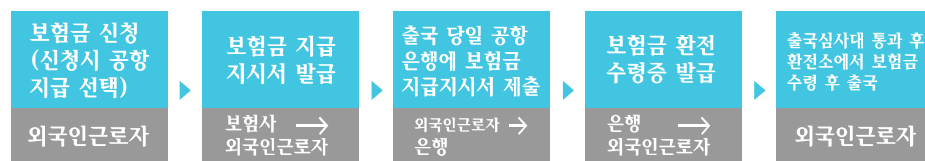
✳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과의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차액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액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는 절차 도입

▶ 본국 귀국후 해외 수령 방식



▶ 출국 당일 공항 수령 방식(인천국제공항)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관련 주요 법 개정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28 공포, '14.7.29 시행)

 개정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①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2년 → 3년)
- ②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시)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운용
 - * 휴면보험금등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계속
- ③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변경
 -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한 때 부터 14일 이내'로 규정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 후 신청하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도입목적	퇴직금일시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
근 거	외고법제13조·동법시행령 제21조	외고법제15조·동법시행령 제22조	외고법제23조·동법시행령 제27조	외고법제23조·동법시행령 제28조
가입대상	사 용 자	외국인근로자	사 용 자	외국인근로자
적 용 사 업 장	- 상시 1인 이상 ·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 ·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몽골 기타 : 50만원 -스리랑카 : 60만원	- 각 호중 하나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
피보험자 또는 수 익 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및 별치규정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이하 별금	근로계약효력발생일 부터 80일 이내 - 500만원이하 과태료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 별금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 별금
보 험 금 납부방법	월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	일 시 금 국가별 40~60만원	일시금, 근로자 1인당 : 1년/15,000원(보험료율:연0.476%)	일시금 3년/20,000여원 (성별, 연령에 따라 차등)
보 험 금 지급사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적 출국 제외)	사용자의 체불임금 발생시 지급원칙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지급금액	- 1년이상 근무하고 350일이상 가입자 101.5~106%,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이상 가입자 101.5~106%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2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 상해사망,후유장애: 최대 3천만원 - 질병사망, 고도장애: 1.5천만원

● 쟁점 사항별 Q&A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개정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의 신청 및 수령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 보험금 신청은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시 약 1개월 전 (출국예정신고 후)에 보험사업자(삼성화재)에게 신청
 - * 다만, 사업장변경자의 경우에는 최종사업장 퇴사 후에 신청 가능
- ✱ 보험금 수령은 출국 전 국내에서 수령하던 것을 출국 후 본국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수령하거나,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 *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자격 변경,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금 신청 후 국내 수령(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2) 해외계좌입금, 공항지급 등 출국만기보험금 수령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아래의 4가지 보험금 수령방식 중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보험사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사실 확인 후 해당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구분		지급방식
본국 귀국 후 해외 수령 방식	본인해외계좌입금	본인의 현지 계좌로 송금
	해외송금전용계좌 *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어도 가능	현지계좌(가족, 제3자)와 연결된 해외송금전용계좌 (국내계좌)로 송금
	현지은행직접송금 *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가 없어도 가능	보험금 신청 시 은행사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본국 귀국 후 지정된 현지은행에서 본인이 수령
출국 당일 공항 수령 방식	공항 지급	출국 당일 공항의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 지시서'를 제출하고 '수령증'을 받은 후, 출국심사를 마치고 환전소에서 수령증 제시 후 보험금 수령

3)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으면 본국 귀국 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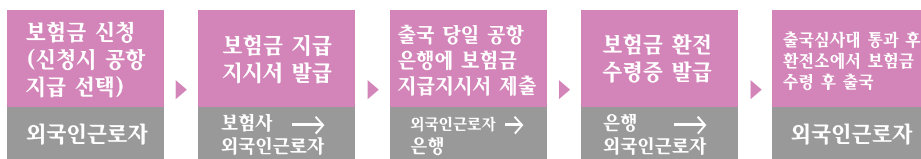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수령이 가능함

- ✱ 한국 체류시 생활비 송금 등으로 국내에서 개설한 해외송금전용계좌로 신청할 경우, 해외송금 전용계좌에 연결된 현지계좌(가족, 제3자등)로 자동 송금되므로, 해외에서 수령 가능
- ✱ 본인의 해외 현지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계좌)가 없더라도 현지 은행 직접송금방식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수령 가능
 - *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 외국인근로자는 본국 귀국 후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고유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에서 보험금 수령

4) 출국당일 공항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금 신청 시 수령방식 중 '공항지급'을 선택하면, 보험사업자는 신청 직후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교부

- ✱ 출국당일 외국인근로자는 여권, 항공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지참하여, 공항 내 지정된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여권 및 항공권 등을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환전 수령증'을 제공
-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내 위치한 환전소에서 환전수령증을 제시하고 원하는 통화(현금)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



5) 금융시스템이 열악한 송출국가의 경우 출국한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미 국내 시중 은행사를 통해 15개국 송출국에 대해 3가지의 해외송금(①해외계좌입금, ②해외송금전용계좌, ③현지은행 직접송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에 있어, 현지국가의 금융시스템 문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임.

해외송금 방식은 질의 2번 참조

아울러, 현재(법 시행이전)도 출국 전 국내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출국한 경우에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외 계좌 송금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13년 외국인근로자 1,500명(8억원)이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음

그럼에도, 자국의 금융시스템의 불안 등으로 본국 귀국 전 수령을 원할 경우,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 후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할 수 있음.

공항지급 신청 및 절차는 질의 4번 참조

6) 불가피하게 출국 전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국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현지 귀국 후 자국에서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계좌 송금 등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출국 후 본국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은 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하였으나, 개정법률에 출국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음.

참고로,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를 연장(2년 → 3년)하여 보험금 지급권을 대폭 강화 하였고,

✳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미청구 보험금도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해외에서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 본인이 보험금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 (보험사의 접수 대행을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서 함)

7) 현재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는데, 출국 후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금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해당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립해 놓는 것임.

따라서,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 사용자의 경영사정이나 임금체불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음

8)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변경 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금도 출국 후에 지급 받나요?

금번 법 개정에는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체류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종 사업장 뿐 아니라 변경 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도 출국 후 14일 이내 일괄 지급받게 됨

* 예시) 체류기간 중 A,B,C사업장 총 3번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최종 사업장인 C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A,B,C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을 통합하여 청구하며 보험금은 출국 후에 지급 받게 됨.

퇴직금보다 출국만기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 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 하여 국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사업주에게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9) 개정법 시행일이 '14.7.29로 되어 있는데, 법 시행일인 '14.7.29 이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에 지급 받게 되나요?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법 부칙 제2조)

※ 따라서, 출국예정신고 또는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14.7.29
이전에 보험금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일('14.7.29) 이후 출국하더라도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예시) ①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14.7.28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출국 할 수 있음
②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14.7.29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10)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
험금이 법정퇴직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 수령액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 >

11) 법정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도 출국 후에 지급
받아야 하나요?

법정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법정퇴직금과 보험금과의 차액관련 사항은 금번 법 개정으로 변경된 바가 없음

12) 출국만기보험금액을 출국 전에 정확히 알아야 출국만기 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에도 보험 약관 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 전에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게 해당보험금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업자는 즉시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을 서면으로 교부해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임.

※ 동 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출국만기보험 수령예정액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연락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 - 1350 (내국인) / 국번없이 1350 (외국인/ 영어, 중국어)

연번	기관명	주 소	연락처
1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1번지 장교빌딩4층	02-2004-7397
2	서초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10	02-580-4983
3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889-13, 금강타워 7-10층	02-3468-4794
4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78 송파IT 벤처타워 동관 3~5층	02-2142-8924
5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173, 삼창프라자빌딩 4~5층	02-2077-6000
6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5번지	02-2639-2300
7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상계6동 734-2	02-2171-1816
8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82-4대룡포스트타워 3차 2-3층	02-3282-9200
9	인천고용센터	인천남동구 구월3동 1112번지(문화회관길125)	032-460-4701
10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계산동1063-12 영산빌딩 2-5층(장제로1032)	032-540-5718
11	부천고용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중 3동 1086-3(개념근길235)	032-320-8900
12	김포고용센터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1604 월드타워빌딩3~5층	031-999-0912
13	의정부고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754 신동아파라다움빌딩1-2층	031-828-0812
14	구리고용센터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0-1 태영빌딩 2층	031-560-5840
15	남양주고용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프라자3층	031-560-1991
16	고양고용센터	경기 고양시일산 동구 장항동 736-2, 로데오타워빌딩	031-920-3951
17	수원고용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939번지 신동아파트스텔2-4층	031-231-7864
18	용인고용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581-1 강남엔플러스빌딩3~4층	031-289-2210
19	화성고용센터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59-2 이원타워 7층	031-290-0870
20	성남고용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569번지도촌대덕프라자 2차 4~6층	031-739-3161
21	경기광주고용센터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86번지(광주로216) 선화빌딩 3,4층	031-799-2740
22	이천고용센터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43-37원빌딩1~3층	031-644-3811
23	안양고용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91 번지 안양메썸타워 4층	031-463-0771
24	광명고용센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463-38힐펠리스1-2층	02-2680-1500
25	안산고용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고잔동520-1(원고잔1길)	031-412-6954
26	시흥고용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33-1 정왕프라자3층	031-496-1909
27	평택고용센터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608 장당프라자2층 (중앙로4가 60번지)	031-646-1258
28	춘천고용센터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885-3 넥서스프라자빌딩 2-5층	033-250-1900
29	강릉고용센터	강원도 강릉시교동 1003-18신협빌딩	033-610-1919

30	원주고용센터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51-4 한신프라자 3층	033-769-0900
31	태백고용센터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길 341	033-552-8605
32	삼척고용센터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32, 현진빌딩 4층	033-573-9914
33	영월고용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5리 976-1(본소 소재)	033-371-6260
34	부산고용센터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150-3 부산고용센터	051-860-1919
35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89-18 고용센터빌딩	051-760-7103
36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3동 2270-3 센터빌딩1-5층	051-330-9900
37	창원고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27-3 고용센터빌딩6층	055-239-0900
38	울산고용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04-2	052-228-1919
39	김해고용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1-5	055-330-6421
40	양산고용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85-1	055-379-2400
41	진주고용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127-12 안성빌딩 2~5층	055-760-6743
42	통영고용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0-18	055-650-1800
43	대구고용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053-667-6000
44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469-3	053-605-6500
45	포항고용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8-3	054-280-3000
46	경주고용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59-5, 성동새마을금고 3,4층	054-778-2500
47	구미고용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2, 52-4번지(백산로108)	054-440-3300
48	영주고용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68(휴천3동 36번지)	054-639-1136
49	문경고용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로 85-3	054-559-8232
50	안동고용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41
51	광주고용센터	광주 북구 북동 190-1	062-609-8500
52	전주고용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평로 79번지 (진북동 410-1)	063-270-9100
53	익산고용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063-840-6526
54	군산고용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063-450-0600
55	목포고용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121-4	061-280-0500
56	순천고용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245번지	061-720-9114
57	여수고용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111-1(본소 소재)	061-6500-155
58	대전고용센터	대전 서구 탄방동 659	042-480-6000
59	청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5 월드피아오피스텔 2-4층	043-230-6700
60	천안고용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37 충남타워 2-5층	041-620-7400
61	충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507	043-850-4000
62	보령고용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498-6	041-930-6200

● 보험사업자(삼성화재 컨소시엄) 연락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아이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대상업무 :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험 : 삼성화재 콜센터 및 16개 고객지원센터

– 전용보험 콜센터 : 서울 용산 한강대로38길 37 (용산동5가)

T:02-2119-2400(www.samsungfire.com)

– 16개 고객지원센터 지정 현황

연번	회사명	주소	연락처
1	삼성화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3층 (인계동)	031-230-1042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삼성화재빌딩 1층 (고잔동)	031-413-7144
3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삼성생명의정부사옥 3층 (의정부동)	031-876-8115
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9층 (청당동)	041-559-3714
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74 삼성화재빌딩 2층 (석전동)	055-250-2518
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1 삼성화재빌딩 1층 (수진동)	031-758-8114
7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61 BYC빌딩 5층 (비전동)	031-657-6094
8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13 BYC빌딩 3층 (교현동)	043-845-7114
9	현대해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68 현대해상빌딩 1층 (권선동)	031-230-0543
10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7 현대해상빌딩 1층 (구월동)	032-222-1206
11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 현대해상부산사옥 2층 (초량동)	051-960-1025
12		광주시 서구 시청로 72 현대해상빌딩 2층 (치평동)	062-350-1424
13		울산시 남구 변영로 131 현대해상빌딩 2층 (달동)	052-229-1211
14	LIG손보	전북 익산시 하나로 464 대성빌딩 4층 (어양동)	063-839-3983
15	동부화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8 알리안츠타워 12층 (남산동)	053-251-4137
16	한화손보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대한생명빌딩 9층 (부평동)	032-501-2181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락처

연번	기 관 명	주 소	연락처
	공단 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052-714-8572
1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02-3274-9621
2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 32길 38	02-2024-1755
3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6907-7120
4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248-8506
5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650-5722
6	충북지역본부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820-8652
7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249-1247
8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850-9132
9	성남지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750-6234
10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835
11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620-1935
12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212-7225
13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73	052-220-3262
14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580-2362
15	경북지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840-3021
16	포항지사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251-8517
17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51
18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210-9202
19	전남지사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720-8522
20	목포지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288-3333
21	제주지사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729-0725
22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580-9162
23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043-279-9016
24	충남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620-7625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 **1644-8000**

외국인력 상담센터 : **1577-0071**

www.hrdkorea.or.kr

외국인근로자 4대 전용보험 안내

-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부담 완화)
- 귀국비용보험(항공비용 총당)
-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 상해보험(사망, 질병 대비)